

운전자 좌석 공간(제24조제3항 관련)

1. 운전자 좌석 뒤에는 승객좌석과 분리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할 것. 다만, 승차정원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공간 바로 뒤에 위치한 좌석에 제27조에 따른 좌석안전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 - 가.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800mm 이상일 것
 - 나. 너비는 차실벽면으로부터 운전자 좌석 바깥쪽을 포함하고, 운전자 좌석 뒤쪽의 통로에 인접한 승객좌석 중심에서 통로 쪽으로 100mm 이상일 것
 - 다. 테이블 등과 같이 어떤 물체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의 가장 위쪽 모서리와 칸막이벽시설의 가장 위쪽 모서리와의 간격은 90mm 이상일 것
2. 운전자 좌석 바로 뒤에 위치 한 승객좌석에서 직경 50mm 구가 운전자 좌석으로 굴러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일 것
3. 운전자 좌석 공간은 햇빛 및 차실 내에 제공되는 조명으로 인한 반사 또는 눈부심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
4. 운전자 좌석 공간에는 운전자가 조작 가능한 안개제거장치와 서리제거장치를 설치 할 것
5. 운전자 좌석은 독립적인 구조이고 완충장치를 갖추 것. 다만, 승차정원 23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완충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6. 운전자 좌석 공간에는 곡선 형태의 등받이를 설치하거나 팔걸이를 설치할 것. 팔걸이를 설치하는 경우 좌·우 팔걸이 사이의 간격은 450mm 이상일 것
7. 운전자 좌석 중심에서 수직으로 250mm 지점까지의 좌석 등받이의 너비는 450mm 이상일 것